

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3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3월 31일

3. 제안 이유

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,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, 징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-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정함 (안 제3조)

- 소비자의 생명·건강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물품의 조사 및 시험검사, 회수, 수거,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
(안 제4조 내지 7조)
-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거래를 금지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·광고 실태와 계량·규격의 실태를 조사하며 부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(안 제8조 내지 제12조)
-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사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3조 내지 제17조)
- 소비자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·검사·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(안 제18조, 제19조)
- 소비자 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하고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각종 시험·검사 시설의 설치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20조 내지 제22조)
-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함
(안 제23조 내지 제29조)

-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·시설에 검사 및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30조 제33조)
-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금액 및 부과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34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등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,
- 제24조 심의사항에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제25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조정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